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79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조승환·김승수·이성권

유용원 · 김성원 · 권영진

김장겸 • 곽규택 • 김은혜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2010년 수립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음.

그런데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 기업의 사업 범위를 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은 강화하되, 공공의 비효율을 개선한 개념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함.

또한, 마을기업은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재적소에 공유 및 재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내

복지도 증진하고자 함.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지원 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각각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와 시·도마을 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마을기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유휴자원을 공유·활용한 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이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3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 구성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의 혜택을 제 공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시·군·자치구의 구역 내에서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고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 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 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 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 3.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 4.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 5. 마을기업지원기관 등 지원체계 구축
 -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원계획(이하 "시·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ㆍ도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시 · 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 3.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 4. 시 · 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 5. 시 · 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6. 시·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시·도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 관리
- 3.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우수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지원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 등을 위하여 시·도 에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마을기업의 사업) 마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 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 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 다. 국가유산 보존 관리 활용 사업
 - 라. 지역 내 유휴자원을 공유 및 활용한 사업
 - 마. 그 밖에 마을기업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익사업
- 2.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 제12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 5. 지역의 소득・일자리창출 기여, 지역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공공성・지역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심의・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기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 3. 시설비 등의 지원ㆍ융자
 - 4. 부지구입 융자
 -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6. 마을기업의 생산제품 ·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 7.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9.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이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청년마을기업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구성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 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5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지원 기반조성

- 제17조(마을기업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건의
 -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 3.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 4. 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 6. 마을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부설 기관 운영
- 7.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마을기업 관련 사업
- 8.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 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 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할 지역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 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 2.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협력
 - 3. 마을기업과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법인, 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4.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5. 마을기업에 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 6. 마을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7.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
- 8.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마을기업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검사를 한결과 필요하면 시정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 이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